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일부개정 2022. 10. 31. 규정 제881호

1. 개정사유

- 「국가공무원법」과 「한국체육대학교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원’ 용어를 정비함.
- ‘동문’ 용어 신설 및 ‘동문선거인’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개정 권고사항 및 선거사무위탁협약의 내용을 반영함.
-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개최시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일부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직원’ 용어를 「국가공무원법」, 「한국체육대학교 취업규칙」 및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4조제1항제7호)
- ‘동문’ 용어를 신설하고, ‘동문선거인’의 선거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4조제4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절차사무 편람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에 대한 공지일을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2일전까지’로 수정함. (안 제20조제3항)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의 선거사무위탁협약에 따른 선거사무 관련 규정을 수정함. (안 제25조제1항·제4항·제6항, 제29조제1항)
- 추천위원회가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선거인이 후보자에게 정책질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안 제26조제5항)
-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공고일’로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함. (안 제2조1항, 제12조, 제20조제1항)

3. 주요 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참고) : 「국가공무원법」 제2조, 「한국체육대학교 취업규칙」 제3조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마. 붙 임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개정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원”을 “교원, 직원 및 학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한국체육대학교 취업규칙」 제3조제2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대학회계직원, 대학회계 무기직원 또는 대학자체직원,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8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원(무기계약직)으로서 본교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제13호까지를 제12호에서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동문”이란 학부, 일반대학원 및 특수 대학원의 졸업생을 말한다.

제12조 단서 중 “선거일 공고”를 “선거공고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선거일 공고”를 “선거공고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거일 공고”를 “선거공고일”로, “직원·조교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를 “직원, 조교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학생”을 “학생·동문”으로 한다.

③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정학 또는 국내외 교류수학 중인 학생, 해외인턴십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중 선거권을 가진 학생선거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를 졸업한 동문 중 선거권을 가진 동문선거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선거일 공고일”을 “선거공고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일 2일 전까지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학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수량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한과 수량을 준수하여 이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는 후보자가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를 “선거공보를관할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 동봉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후단에서 정한”을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추천위원회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거인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중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을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하며, 직원·조교·학생의 참여 비율, 참여 범위, 투표 방식, 환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를 “한다” 로 한다.

부 칙(제881호, 2022.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적용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정 공포 후 최초로 실시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기간 및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가 조정하여 공지하는 기간 및 기한을 이 선정규정상의 관련 기간 및 기한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 ①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총장 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해당 대학 <u>교원의</u>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p> <p>② (생 략)</p>	<p>제2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 ① ----- ----- ----- -----<u>교원, 직원 및 학생의</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정의) ① (생 략)</p> <p>1. ~ 6. (생 략)</p> <p>7. “직원” 이란 「<u>고등교육법</u>」 제14조제3항의 공무원인 <u>직원</u>, 「<u>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u>」 제29조에 따른 <u>대학회계직원(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p> <p>8. ~ 9. (생 략)</p> <p><u><신 설></u></p> <p><u>10. ~ 13.</u> (생 략)</p>	<p>제4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국가공무원법</u>」 제2조에 따른 <u>일반직공무원과 「한국체육대학교 취업규칙</u>」 제3조제2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u>대학회계직원, 대학회계 무기직원 또는 대학자체직원,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u>」 제8조에 따른 <u>산학협력단 직원(무기계약직)</u>으로서 <u>본교에 재직 중인 사람을</u> ----- ----- -----.</p> <p>8. ~ 9. (현행과 같음)</p> <p><u>10. “동문” 이란 학부,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졸업생을 말한다.</u></p> <p><u>11. ~ 14.</u>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p>
<p>제12조(위원의 보궐) 위원이 해임 또는 사임 등으로 궐위 시 총장은 그 궐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u>선거일 공고</u> 후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p>	<p>제12조(위원의 보궐) ----- ----- ----- -----<u>선거공고일</u> ----- ----- -----.</p>
<p>제14조(선거권) ① <u>선거 공고일</u>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휴직이나 정직 중이 아닌 사람 및 6개월 이상 국외장기파견자가 아닌 사람(이하 “<u>교원선거인</u>”이라 한다)은 선거권을 가진다.</p>	<p>제14조(선거권) ① <u>선거공고일</u> ----- ----- ----- ----- -----.</p>

현 행	개 정
<p>② <u>선거 공고일</u>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u>직원·조교 및 재학 중인 학생</u>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p> <p>1. ~ 2. (생략)</p> <p>3. 휴학·정학 또는 국내외 교류수학(해외인턴십을 포함한다) 중이 아닌 학생(이하 “학생선거인”이라 한다)</p> <p><u><신설></u></p> <p><u><신설></u></p> <p>③ 직원·조교 및 <u>학생</u>의 참여 비율, 참여 범위, 환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p>	<p>② <u>선거공고일</u>----- <u>직원, 조교로서,</u>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③ <u>선거공고일</u>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휴학·정학 또는 국내외 교류수학 중인 학생, 해외인턴십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중 선거권을 가진 학생선거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p> <p>④ <u>선거공고일</u> 현재 본교를 졸업한 동문 중 선거권을 가진 동문선거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p> <p>⑤ ----- <u>학생·동문</u>----- ----- -----.</p>
<p>제20조(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열람)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및 기일에 <u>선거일 공고일</u>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확정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추천위원회는 <u>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작성완료일의 다음 날 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및 장소를 학내에 공지하여야 한다.</u></p>	<p>제20조(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열람) ① ----- ----- <u>선거공고일</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선거인명부작성일 2일 전까지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u> ----- ----- -----.</p>
<p>제2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u>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수량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략)</p> <p>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의</p>	<p>제25조(선거공보) ① ----- ----- ----- <u>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한과 수량을 준수하여 이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는 후보자가 부담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현 행	개 정
<p>확인을 거쳐 제출한 선거공보를 <u>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u> 선거인에게 발송한다.</p> <p>⑤ <u>추천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발송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송하게 할 수 있다.</u></p> <p>⑥ 후보자가 <u>제1항 후단에서 정한</u>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에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p> <p>⑦ ~ ⑨ (생 략)</p>	<p>----- <u>관할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 동봉하여</u> -----.</p> <p><삭 제></p> <p>⑥ ----- <u>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u>-----</p> <p>-----.</p> <p>⑦ ~ ⑨ (현행과 같음)</p>
<p><u>제26조(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① ~ ④</u> (생 략)</p> <p><신 설></p>	<p><u>제26조(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① ~ ④</u> (현행과 같음)</p> <p>⑤ <u>추천위원회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거인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u></p>
<p><u>제29조(선전벽보) ①</u>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u>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u> 추천위원회에 선전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 략)</p>	<p><u>제29조(선전벽보) ①</u> -----</p> <p>-----</p> <p><u>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한까지</u> -----</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제36조(투표방법) ①</u> (생 략)</p> <p>② 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직접·비밀의 방법으로 <u>하며, 직원·조교·학생의 참여 비율, 참여 범위, 투표 방식, 환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u></p> <p>③ (생 략)</p>	<p><u>제36조(투표방법) ①</u> (현행과 같음)</p> <p>② -----</p> <p>----- <u>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부 칙(제881호, 2022. 10. 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간 적용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정 공포 후 최초로 실시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기간 및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가 조정하여 공지하는 기간 및 기한을 이 선정규정상의 관련 기간 및 기한으로 본다.</p>